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①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②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③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병원개설 사전심의) 작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①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②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③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문병원 지정·취소)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병원 관리를 강화하여, 전문병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태아 성별고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2헌마356 등) 태아의 성별고지 제한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

④ (진료기록 전송)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진료 정보 공유로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간병서비스)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 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 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⑥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 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

(개정) 현행 +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다.

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의 주기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 근거를 명확화하고, 업무 위탁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 지출 통계 산출 등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① (활동지원 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강화되어, 국가 전반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9. 「노후준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걸쳐 균형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준비서비스를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는 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노후준비계획 수립에도 반영토록 하였다.

그 외 ▲경로당에 부식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중양·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분할연금 산정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9헌가29, 2024. 5. 30.)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제418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

담당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장	백진주	(044-202-2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기욱	(044-202-2271)
	의료법 <병원개설 사전심의>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장	오상윤	(044-202-2450)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은미	(044-202-2451)
	의료법 <전문병원 지정·취소>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장	성창현	(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병진	(044-202-2405)
	의료법 <태아성별 고지>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장	성창현	(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준형	(044-202-2402)
	의료법 <진료기록 전송>	첨단의료지원관	책임자	과장	신지명	(044-202-2920)
		의료정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2-2929)
	의료법 <간병서비스>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장	박혜린	(044-202-2690)
		간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진	(044-202-2699)
	의료법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정숙	(044-202-2770)
		보험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욱	(044-202-2780)
	약사법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책임자	과장	남후희	(044-202-2490)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2-2492)
			담당자	사무관	김소영	(044-202-248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책임자	과장	성재경	(044-202-3140)
			담당자	사무관	최세종	(044-202-3144)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책임자	과장	왕형진	(044-202-3720)
			담당자	사무관	김성겸	(044-202-37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장	신재형	(044-202-2490)
			담당자	사무관	김준범	(044-202-349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장	박문수	(044-202-3470)
			담당자	사무관	배종우	(044-202-347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장	모두순	(044-202-3340)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044-202-3344)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장	성창현	(044-202-2420)
			담당자	사무관	정현진	(044-202-2414)
	노후준비지원법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장은섭	(044-202-2360)
			담당자	사무관	권태형	(044-202-2486)
	노인복지법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장	박문수	(044-202-3470)
			담당자	서기관	박광훈	(044-202-347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장	모두순	(044-202-3340)
			담당자	사무관	이대복	(044-202-335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책임자	과장	이춘희	(044-202-331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2-3307)
	국민연금법	연금정책관	책임자	팀장	박정우	(044-202-3630)
		연금급여팀	담당자	사무관	황상철	(044-202-3632)

구분	법률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 ▶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근거	공포 후 6개월
		▶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삭제	공포한 날
		▶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전송시스템 등을 통하여 본인의 진료기록 전송 요청 근거를 마련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 요청 거부 시 벌금 부과(벌금 500만원 이하)	공포 후 6개월
		▶ 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승인 신설 ▶ ②종합병원(100병상 이상)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	공포 후 6개월
		▶ 의료기관 장은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 정부는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함	공포 후 1년
		▶ 의료기관 평가, 인증, 지정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하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포 후 1년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법인이 개설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신설 ▶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 마련	공포한 날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 근거 신설* * 동물병원개설자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유통정보 등 파악 목적 ▶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 판매 시 그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제출	공포 후 1년 6개월

구분	법률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 후견인 삭제	공포한 날
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규정 마련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 규정 명확화	공포 후 6개월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국가 및 지자체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 규정 ▶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	공포 후 6개월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	'26.1.1.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국가·지자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노력 ▶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 파악 위한 정기실태조사 실시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의 미운영을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 고려	공포한 날
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의 알 권리를 명시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 근거 규정을 두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공포 후 1년
9	「노후준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노후준비서비스를 문화적 영역 등 전반적 영역을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 정의	공포한 날

구분	법률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	'26.1.1.
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공포 후 1년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공포 후 1년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토록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의 헌법불합치에 따라, 위헌성해소를 위해 부칙 개정	공포한 날